

## 1. 개정이유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제4조제2항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, 관련 민원 처리기간도 타 부처와 유사한 기간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임. 또한,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하여 장기간 미활동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 
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14일”을 “2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14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14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7일”을 “즉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